

의안번호	2205272
의 퇴 인	김기현 의원
회 답 일	2024. 11. 28.
추 계 번호	24F48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 3년 이후 동종업종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감면 적용 - 현행법은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5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①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내 50%, 수도권 외 100% 감면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0% 감면 ③ 신성장 서비스업 중사기업: 최초 소득발생 이후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④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시 고용증가율의 1/2를 추가로 감면(최대 50%)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재정수입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폐업한 기업 중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규모를 전망해야 하지만 관련 실적통계가 부재하여 추계가 불가능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창업기업의 폐업 및 폐업 이후 재창업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폐업 기업의 재창업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
- 참고로 최근 5년(2019~2023년)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 후 폐업한 중소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기준 창업중소기업은 123만 8,617개사임

[표 1] 창업중소기업 현황: 2019~2023년

(단위 : 개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업 수	1,285,259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주: 연도는 기업의 창업개시 연도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 2018년 창업 기업의 2019년 생존율은 63.6%에서 2021년 기준 생존율은 44.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중소기업의 폐업 현황 통계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발표하고 있는 신규 창업기업의 연차별 생존율을 토대로 폐업 현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2] 2018~2020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현황¹⁾

(단위 : %)

구분	2018년 창업	2019년 창업	2020년 창업
'18년 기준 생존율	—	—	—
'19년 기준 생존율	63.6	—	—
'20년 기준 생존율	51.8	64.7	—
'21년 기준 생존율	44.2	53.5	64.7

주: 2021년까지 생존율 추정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2023.12.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